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가합54598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2014. 5. 2.

판결 선고2014. 5. 2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1,594,621원 및 그 중 498,957,501원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4. 1.

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B,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81,935,701원 및 그 중

280,119,381원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4. 1. 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D은 피고 A, B, C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26,317,810원 및 그 중

124,501,490원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3. 10. 1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 체결된 매매계약을 19,413,59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19,413,59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고, F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1차 보증 2005. 9. 21.	153,000,000(122,400,000)	2006. 9. 21.(2013. 9. 13.)	2005. 9. 21.(2013. 9. 13.)	180,000,000
2차 보증 2006. 9. 20.	153,000,000	2007. 9. 20.(2013. 9. 13.)	2005. 9. 21.(2013. 9. 13.)	180,000,000
3차 보증 2012. 6. 25.	216,000,000	2013. 6. 24.	2012. 7. 2.(2013. 6. 24.)	240,000,000

2) F는 원고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F가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2. 12. 1.부터는 손해금율 연 12% 적용), ② 추가보증료(보증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의 전날까지 1.9%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③ 채권보전비용(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일체)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때 피고 A(2013. 6.경 퇴임하기까지 F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B, C(피고 A의 모친이다), D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금이 지급됨으로써 F가 원고에 대해 위와 같이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다만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중 1, 2차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피고 D은 1차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만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대위변제 등의 경위

1) F가 2013. 6. 22.경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우리은행은 같은 해 7. 25.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9. 6. 대출원금 491,400,000원(1차 122,400,000원 + 2차 153,000,000원 + 3차 216,000,000원) 및 이자 7,557,501원(1차 2,101,490원 + 2차 2,617,891원 + 3차 2,838,120원)의 합계 498,957,501원을 우리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권보전을 위해 피고 C을 상대로 가압류(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2077, 2013카단13125)를 신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1,816,320원에 이른다.

다. 부동산 처분의 경위 및 당시 피고 C의 재산상황

피고 C은 2013. 4.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딸인 피고 E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처분한 다음, 같은 달 9. 피고 E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

당시 피고 C은 시가 2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와 시가 72,000,000원 상당의 인천 서구 G 소재 아파트지하상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해 약 280,000,000원 이상의 구상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NH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만도 약 180,000,000원에 달하였고, 2013. 8.경 이 사건 아파트 및

위 지하상가에 관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 명의로 청구금액 43,241,360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로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을 전후하여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NH농협은행 화곡중앙지점장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i) 원금 부분과 관련하여, ① 피고 A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지급한 대위변제금 등의 합계 501,594,621원 {대위변제금 498,957,501원 + 3차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추가보증료 820,800원 ($216,000,000\text{원} \times 1.9/100 \times 73/365$) + 채권보전비용 1,816,320원}을, ② 피고 B,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의 합계 281,935,701원(대위변제금 280,119,381원 + 채권보전비용 1,816,320원)을, ③ 피고 D은 피고 A, B,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의 합계 126,317,810원(대위변제금 124,501,490원 + 채권보전비용 1,816,3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ii) 지연손해금 부분과 관련하여, 위 피고들은 위 각 금원 중 대위변제금(피고 A의 경우 498,957,501원, 피고 B, C의 경우 280,119,381원, 피고 D의 경우 124,501,49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피고 A의 경우 2014. 1. 7., 피고 B, C의 경우 2014. 1. 7.(최종송달일), 피고 D의 경우 2013. 10. 17.}까지는 약정 이율 상당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피고 C이 피고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야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의 대출금채무를 우리은행에 대위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을 전후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05.

9.경, 2006. 9.경. 및 2012. 6.경 이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었던 점, ② F는 이 사건 아파트가 처분된 직후인 2013. 5.경부터 국세는 물론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마저도 그 지급을 연체하던 중, 급기야 같은 해 7. 30. 인천지방법원의 결정(2013회합32호)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할 즈음 F의 재정상황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 당시에 이미 F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2013. 9. 6.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라 실제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1) 피고 C의 앞서 본 재산현황과 나머지 피고들과의 관계,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총 재산의 부족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요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딸인 피고 E에게 이전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등기부상 매매가 등기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 내지 매매대금의 입·출금내역 등 관련 자료가 제출된 바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 처분행위는 그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채무자인 피고 C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E의 악의는 추정된다(피고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의 딸이자 피고 A의 동생으로 이들과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12.경까지 F의 감사로 장기간 재직하였다는 점(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에서 더욱 그러하다).

2)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C,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때 법원으로서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가 20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H농협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애초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을 216,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C으로 하는 NH농협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인 2013. 4. 9. 당시까지의 잔존 피담보채무 180,586,405원(대출원금 180,000,000원 + 이자 586,405원)이 상환됨에 따라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인 200,000,000원에서 말소된 NH농협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80,586,405원을 공제한 19,413,595원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기준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C과 피고 E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4. 2. 체결된 매매계약을 19,413,59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 E은 원고에게 19,413,5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마용주

판사김나나

판사성준규

별지